Yulchon Legal Update

2023.1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례 소개

- "제1호 기소" D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결정 및 대표이사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결

지난 2023. 11. 3. 창원지방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1호 기소" 사례인 D산업 사건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3년, D산업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D산업은 2022. 2.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에게 집단급성간중독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2022. 6. 27. 기소[1]되었는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후 적용된 첫 기소사례이자 첫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 사건으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한편, D산업 측은 재판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각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바, 위 판결 및 결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1심 판결의 요지

D산업은 에어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전자제품제조업)로서, 세척제 제조업체로부터 세척제를 구매하여 에어컨 부품 탈지 작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때 세척제에는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이 함유되어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산업의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도 마련하지 않는 등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여, 유해물질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근로자들에게 세척제 성분 및 그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점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지 반기가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거나, 평가·관리해야 하는 의무는 본 사건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2].

1) 다만,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였으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한 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고 기소되었습니다.
2) 이와 유사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반기가 경과하기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반기 1회 이상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미비(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법원은 그간의 형식적인 설시에서 진일보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가 마련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보다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란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포함하여 경영책임자등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하고, 이러한 확인 절차에는 사업장에서 실제 유해위험 작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절차란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하고 유해위험요인 별로 제거, 대체, 통제하는 방안을 의미한다고 설시 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령상의 형식적인 기준만을 설시한 채 곧바로 사안을 포섭하던 판결에 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위험성평가에 관한 절차로 동법 시행령 제4호 제3호를 갈음하기 위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평가, 관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앞선 판례들의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D산업 측이 제시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성 평가 매뉴얼', 'ESH 업무매뉴얼' 등에 대하여, ①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제36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D산업의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②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염화메틸렌을 세척제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위험성평가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진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③ ESH 업무매뉴얼은 D산업으로부터 에어컨 부품을 공급받는 L전자의 D산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D산업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과는 무관하다는 점 등을 들어 D산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미비(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충분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야 한다고 설시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D산업이 제시한 ① '2021년 인사평가 실시계획 및 결과 보고'는 D산업의 관리직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에 관한 내용일 뿐이라는 점, ② '보건관리자비대면 설문지'는 인사평가 대상 직원들이 직접 자신의 성과, 실적, 그렇게 판단한 이유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인사평가에 앞서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이 미비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하면, 본 판결의 쟁점에 관한 설시는 다소 추상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호 제3호 및 제5호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한 사안이고, 이에 따라 법원이 문제된 시행령 조항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D산업은 설사 대표이사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미이행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허위로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로 인하여 유해물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안전보건확보의무 미이행과 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법원은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결정

D산업 측은 2022. 10. 13. 재판 과정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조항 및 그 불이행 시 처벌조항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각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법조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초기부터 문제 제기되었던 부분으로써, 재판부의 인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먼저, 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조항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예측가능성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 개념만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경영책임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전문가에게 조언 받을 수 있어 자기에게 부여된 의무 내용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처벌 조항인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에 대하여는 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에게'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법률 조항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고의로 발생한 중대재해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방법 및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처벌 조항에 관하여 ③ 무면허,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와의 비교를 통해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역시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은, 사망 또는 상해를 야기한 교통사고의 과실범을 처벌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는 그 처벌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평등원칙 위반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의 위와 같은 결정으로 세간의 관심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이 해당 사건에서 일응 정리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D산업으로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다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들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각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과 관련하여서는 귀추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 Areas

중대재해센터

Contact

조상욱 변호사
02-528-5355
swcho@yulchon.com

안범진 변호사
02-528-5919
bcan@yulchon.com

김수현 변호사
02-528-5070
soohyun@yulchon.com

이승호 변호사
02-528-5564
seungholee@yulchon.com

송민경 변호사
02-528-5797
mksong@yulchon.com

정원 변호사
02-528-5283
wjung@yulchon.com

정유철 변호사
02-528-5212
ycjung@yulchon.com

정대원 변호사
02-528-5252
dwchung@yulchon.com

이랑 변호사
02-528-5427
ryie@yulchon.com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2023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